

**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84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0.

발 의 자 : 이재관 · 정진욱 · 장철민  
박용갑 · 김남근 · 이훈기  
이주희 · 박희승 · 안도걸  
송재봉 · 장종태 · 박지원  
남인순 · 주철현 · 최혁진  
권향엽 · 김 윤 의원  
(17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, AI 데이터센터 · 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

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,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(안 제43조의2 신설).

##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전단 중 “이하 이 조에서”를 “이하”로 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력거래의 특례) ①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공급 필요성,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첨단전력산업의 유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및 전기공급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항 중 “분산에너지사업자”는 “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”로 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3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「전기사업법」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( <u>이하 이 조에서 “전력시장”이라 한다</u> )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. | 제43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del>이하</del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② ~ ⑦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43조의2(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력거래의 특례) ①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</u>                |

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
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  
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  
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  
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
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 
공급 필요성, 전력시장에 미치  
는 영향 및 첨단전략산업의 유  
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 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 
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 
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및 전  
기공급에 관하여는 제43조제2  
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 
이 경우 같은 항 중 “분산에너  
지사업자”는 “제1항에 따라 승  
인을 받은 발전사업자”로 본다.